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351 호 2022. 7. 7.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-156호[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사항 고시]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-157호[하천점용 허가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-159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3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907호[행정대집행 영장]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910호[공시송달 공고] 6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922호[행정대집행 계고서] 7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923호[공시송달 공고] 8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929호[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] 9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948호[도로 지정 공고] 12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
--------	-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미디어정보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- 156호

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7월 7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□ 고시내역

협의 번호	협의자		점용장소	면적 (㎡)	협의기간	점용목적
	성명 (생년월일)	주소				
제2022 -9호	울산광역시 복구청장	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	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367-16번지 일원	3,500 (해수인수 관로 80mm*1개, 이동시설물)	'22. 07. 01. ~ '22. 08. 22.	물놀이장 운영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- 157호

하천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7월 7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성명	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		
주소	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3길 8		
점용 위치	○ 울산광역시 복구 시례동71-7번지	하천의 명칭	○ 상안천
점용 내용	○ 콘크리트전주 설치(1본)	점용 면적	○ 일시: 18m ² ○ 계속: 0.196m ²
점용 기간	○ 일시: 2022. 7. 7. ○ 계속: 2022. 7. 8. ~ 2026. 12. 31.	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- 159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7월 7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소재지 지번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오치골7길 11	양정동 484-30	2022. 7. 7.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(☎052-241-7283)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2. 7. 7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5.11.18.>

제 2022-907 호

행정대집행 영장

성명 미상

귀하

주소: 미상

2022년 6월 8일, 제2022-79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적치물을 2022년 6월 23일 까지 원상복구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,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복구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 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※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대집행 일시	행정대집행 책임자			행정대집행 비용(추산액)
	소속	직위(직급)	성명	
2022년 7월 12일	건설과	시설6급	노선화	550,000원 이내

2022년 6월 29일

울 산 광 역 시
복 구 청 장



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3호서식]

제 호

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

소 속: 건설과

직위(직급): 시설6급

성 명: 노선화

위 사람은 2022년 6월 29일, 제2022-907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
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.

2021년 6월 30일

울 산 광 역 시
북 구 청 장

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- 910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하천구역(동천) 내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,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3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**공고내용:**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
2. **공고기간:** 2022. 7. 7. ~ 2022. 7. 21. (14일간)
3. **공고장소:** 시군구보, 홈페이지, 게시판
4. **무단점유 현황**

재산의 표시		무단점유현황				비 고
소 재 지	번지	행위자	주소	점유내용	점유면적 (㎡)	
울산광역시 복구 진장동	1028번지	미상	미상	불법점용	7	

5. 공시송달내용

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, **2022. 7. 15. (금)까지**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,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

제2022-922호

행정대집행 계고서

성명: 미상

주소: 미상

2022년 6월 13일,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82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적치물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**2022년 7월 21일까지**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「하천법」 제48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「하천법」 제73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면적	대집행 방법
어물동1240-148	불법 적치물 (텐트, 의자 등)	40㎡	불법 적치물 철거

2022년 7월 1일

울산광역시
북구청장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- 923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하천구역(염포천) 내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,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1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**공고내용:**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
2. **공고기간:** 2022. 7. 7. ~ 2022. 7. 21. (14일간)
3. **공고장소:** 시군구보, 홈페이지, 게시판
4. **무단점유 현황**

재산의 표시		무단점유현황				비 고
소 재 지	번지	행위자	주소	점유내용	점유면적 (㎡)	
북구 양정동	516	미상	미상	불법경작	640	
북구 양정동	771	미상	미상	불법경작	54	
북구 양정동	771-1	미상	미상	불법경작	94	
북구 양정동	961-30	미상	미상	불법경작	278	

5. 공시송달내용

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한 행위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, **2022. 7. 21일까지**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, 기한 내 미이행 시 「하천법」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- 929호

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「건축법」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라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물 3

비빔3 곱배기

2022년 7월 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건축허가(신고) 취소
2. 당사자 및 허가내역

건축주	대지위치	허가번호	허가일자
김용*	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478	2013-건축주택과-신축허가-143	2013-07-05
(주)광명**	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96	2014-건축주택과-증축허가-39	2014-12-17
김용*	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478	2015-건축주택과-신축허가-6	2015-01-06
이석*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66-1	2016-건축주택과-증축허가-2	2016-02-01
(주)지산***	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55-7	2016-건축주택과-신축허가-216	2016-08-03
최윤*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2-7	2016-건축주택과-신축허가-257	2016-10-11
최윤*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2-7	2017-건축주택과-신축허가-107	2017-05-11
박창*	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1000-1	2017-건축주택과-신축허가-111	2017-05-12
황윤*	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128	2017-건축주택과-신축허가-127	2017-06-14
김수* 외 1	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택지개발지구 D60B5L	2018-건축주택과-신축허가-178	2018-07-18
(주)이*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94-3	2019-건축주택과-신축허가-17	2019-02-12

3. 처분의 원인된 사실 : 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

4. 공고내용 :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- 의견제출기한 : 2022. 7. 19.(화)

- 의견제출기관 명칭(주소) :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
(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

5. 공고기간 : 2022. 7. 4. ~ 2022. 7. 19.(14일간)

6. 게시장소 : 북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, 인터넷 홈페이지

7. 기타사항

-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(서면,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)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(☎052-241-80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「행정절차법」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8. 붙임 : 의견제출서 1부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- 948호

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5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제 목 : 도로 지정 공고
2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
3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
4. 공고(도로 지정)내용
 - 가. 도로위치 및 도로개요
 - 울산광역시 복구 관내 도로
 - 나. 세부내역

위 치	지 목	면적(㎡)	소유자	비 고
대안동 511-9	전	30	최**	
대안동 511-4	전	40	최**	
대안동 443-7	전	214	최**	
대안동 443-8	전	35	최**	
대안동 443-9	임야	275	최**	
대안동 443-5	임야	5	울**** **	
대안동 443-6	임야	93	이**	
대안동 1059-1	하천	30	국	

5. 공고방법 :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
6. 관계도서 :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주택과 비치(열람가능)
 도로 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주택과(☎052-241-80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